

특 정 감 사

사회적 책무 위반 및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
특정감사 실시계획

2018. 10.



감 사 실

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목적

- ☐ 방만경영과 관련하여 예산낭비,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“리스크 프로 파일”^{*}에 기반하여, 특정분야 집중 점검·시정

* 총435개 중 방만경영 5대 유형의 약 10개 항목 적용

- ☐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해 채용 및 인력운영, 회계 부정,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체크리스트 기반 점검 실시
- ☐ 공사 내규 등에 정부 경영지침과 상충되거나 방만경영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

2. 감사대상 및 범위

- ☐ 2018. 6. 1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 중점사항 관련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본사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 수행

* 감사대상기간 이전의 업무처리라고 하더라도 감사대상기간 중의 업무처리와 연계된 경우 감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- ☐ (감사기간) 계획수립 후 예비조사를 거쳐 본 감사 실시

- 감사 계획 수립 및 통지 : 2018. 10. 4.
- 감사준비회의 및 사전교육 실시 : 2018. 10. 10.
- 예비조사 실시 : 2018. 10. 8. ~ 10. 12. (4영업일)
- 본감사 실시 : 2018. 10. 15. ~ 10. 26. (10영업일)

□ (감사인원) 청렴감찰팀장 및 감사역 3인으로 구성

감사인	업무분장	감사방법
○○○ 반 장	■ 특정감사 업무 총괄	서면 또는 실지감사
○○○ 감사역	■ 복무관리 업무, 사회적 책무위반 여부 점검 ■ 인사교육 분야 운영현황 점검	
○○○ 감사역	■ 자산, 물품, 용역계약 및 사후관리 업무 ■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업무, 사회적 책무위반 여부 점검 ■ 정부 경영지침 준수 여부	
○○○ 감사역	■ 자산, 물품, 용역계약 및 사후관리 업무 ■ 사회적 책무위반 여부 점검	

- (전문가 활용) 감사중점사항 관련 전산데이터 구조 문의 또는 필요시 자료 요청을 위해 내부 IT전문가를 선정하여 활용
- (타 기관 벤치마킹) 필요시 타 기관 운영형태 등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답사 등을 통해 컨설팅감사 구현

4. 감사 중점사항

- (방만경영 고위험 분야 점검)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위해 ① 자산·물품·용역계약 및 관리 ②복리후생제도 ③인사관리 등 방만경영 고위험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점검
- (사회적책무 위반 예방 점검) ‘사회적 책무위반 여부 점검 체크리스트’ 기반 일제 점검
- (전산시스템 내부통제 미비사항 점검) 방만경영 고위험 분야와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가 미비하거나, 부재하여 관리위험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여 시스템 개선사항 도출

Ⅱ. 분야별 주요 예상문제점

□ 자산·물품·용역 계약 관리 현황 점검

- 자산 및 물품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 발생할 우려 (#77, 88 등)
 - (내용) 자산 및 물품, 장비의 구매/설치/사용/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고 예산이 낭비 요소 및 유용 여부 확인
 - (접근방법) 주요 자산 및 물품 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증빙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부적정 사항이 있는지 확인

□ 복리후생제도 등 운영 업무

- 복리후생비 등 집행 적정성 점검부 (#4, 149, 164 등)
 - (내용)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신설하거나, 제비용 지급 등의 적정성 점검
 - (접근방법) 경영공시 사항 확인, 전년도 대비 신설된 복리후생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여 적정성 점검, 복지 업무 담당자 면담 등

□ 인사·교육 분야 운영 현황 점검

- 인사/교육 분야 적정성 점검 (#135, 144, 147, 149, 164, 170 등)
 - (내용) 인력운영 및 출장, 공가, 보상휴가 등 운영실태 점검 및 교육비 지출 및 환급 업무 적정성 점검
 - (접근방법) 정현원 인력운영 현황, 주요 민원접수 사례, 근태기록 및 교육비 지출/환급 등 기록을 통해 부적정 사항이 있는지 점검

□ 사회적 책무 위반 여부 점검

○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한 업무 현황 점검

- (내용) 채용, 양성평등, 최저임금, 고용차별 등 사회적 책무 위반 예방을 위한 점검
- (접근방법) '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'를 활용해 현행 제도의 위험요인 분석, 법규 위반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

Ⅲ.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

- (감사결과 보고)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상급 감사위원회에 보고

○ 사규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상급감사위원직무규정 제17조에 의거 조치

- (감사결과 통보·점검) 감사결과 지적·개선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, 매분기 이행실적 점검
- (감사결과 공유·공시) 감사결과를 사내전산망에 등록(GW-알림 나라-자료실-감사자료실)하여 전직원에게 공유하고,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,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